

9. 建設共濟組合法 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4,199號 1994. 4. 4.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 2 조 본문중 “법 제2조제2호”를 “법 제2조제4호”로 하고, 동조 제2호·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8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공사
 6. 수질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시설공사
 7.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시설공사
 8.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에 의한 정화·처리시설공사
 9.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시설공사
 10.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공사 및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공사의 부대공사
- 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 3 조(보증의 종류·내용 및 범위 등)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이라 함은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다음 각호의 보증을 말한다.

1. 인·허가 보증
 2. 자재구입보증
 3. 부지매입보증
 4.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5. 대출보증
 6. 어음보증
 7. 납세보증
 8. 분양보증(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의 분양보증을 제외한다)
 9. 리스보증
 10. 할부판매보증
 11. 하도급대금지급보증
 12. 이행지급보증
-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찰보증”이라 함은 공사등의 각종 입찰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입찰참가자로서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2. “계약보증”이라 함은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담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차액보증”이라 함은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 및 입찰유의서등에서 정하는 조합원의 차액보증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손해배상보증”이라 함은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의 계약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하자보수보증”이라 함은 조합원이 준공한 공사등의 시공중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하여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관한 보증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6. “선금급보증”이라 함은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의 이행과정에서 선금 수령시 부담하는 보증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7. “유보기성금보증”이라 함은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의 기성금 수령시 부

담하는 유보금에 대한 보증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8. “하도급보증”이라 함은 조합원이 하도급받고자 하거나 하도급받은 공사등에 대한 각종 보증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③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이 행하는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범위 및 조건등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4 조제1항중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조합”으로 한다.

제 5 조제2항본문중 “지부 또는 출장소(이하 “지부”라 한다)”를 “지점 또는 출장소(이하 “지점”이라 한다)”로 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중 “지부”를 각각 “지점”으로 한다.

제 5 조제3항 및 제5항중 “지부”를 각각 “지점”으로, “지부를”을 각각 “지점을”로 한다.

제 7 조를 삭제한다.

제 9 조중 “정관”을 “조합의 정관”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금융기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4.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한 한국주택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6. 국민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
 7.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8.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9. 종합금융회사에 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0.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1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1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13.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 제15조제1항중 “제47조제2항”을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 부 칙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건설공제조합법이 개정(1993. 12. 10. 법률 제4600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 가. 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에 대출보증·이음보증등 8개의 보증을 추가하여 조합원이 건설업의 영위과정에서 필요한 보증채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기업활동을 촉진하도록 함(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
- 나. 조합이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은행 및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등으로 확대하여 조합의 여유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령 제10조).

〈법제처 제공〉